

『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7월 1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7월 20일

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하여 '06. 3. 24부터 시행되는 긴급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규정 (안 제2조)
 -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
-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(안 제3조)
 - 긴급지원심의위원회구성(15인이내, 민간위원 1/2이상)
- 위원명단 공개(안 제4조)
 -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-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사유(안 제6조, 제7조)
 - 임기는 2년, 연임이 가능
 - 해촉사유는 사망, 질병, 장기출타, 본인이 원할 때, 품의손상 등
- 회의 소집 및 의결(안 제9조)
 - 안 제2조의 사항 심의 또는 의결 필요시,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시
 - 의결 : 재적위원 1/2 참석, 참석위원 1/2 찬성

라. 참고사항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- 긴급지원담당공무원지정·보고 및 관련조례 제·개정 표준안 (보건복지부)
 - 도 사회노인복지과 - 3979('06. 2. 24)호와 관련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하여 2006. 3. 24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연장 결정 등을 심의·의결하고
-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1/2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,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음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으며, 위원의 해촉, 회의소집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

- 안 제3조제3항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「사회보장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자, 사회복지 관련기관 5년이상 종사한 자,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자,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시 의원」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